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58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방형직위(5호, 민원감사담당관)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방형직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금천구 민원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	1명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민원감사담당관	○ 감사 관련 종합계획 수립, 구 본청 및 산하기관 감사실시 ○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 추진, 인권 보호 · 증진업무 ○ 고충 · 진정 민원 처리, 갈등조정 ○ 주요성과 평가, 계약원가심사,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등

※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 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　　령 : 18세 이상 (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 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8.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근무조건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 **보　　수**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결정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 5호	93,801천원	53,316천원

※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13.(화)**, <평일 09:00~18:00> ※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 02-2627-1017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접 수 처 :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주　소 :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9층 행정지원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금천구 수입증지(1층 통합민원실, 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을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에 한해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자	시간 및 장소	
2026.10.16.(금)	2026.10.2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2026. 10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가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구입장소 :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 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 동봉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3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5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장 정보제공 동의서**(첨부6 서식) **1부**

○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5급 이상)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금천구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 강령」 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 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서식 제7호) **1부** (해당자)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호) **1부** (해당자)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의 증빙자료** (해당자)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최종합격자의 경우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하고 경력 입증이 어려울 경우 다른서류(근로계약서, 업무분장내역, 인사기록카드 등)도 함께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02-2627-1017)

붙임 1. 직무기술서 1부.

2.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